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확대〉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430호)

2025. 5.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확대(14명→100명)	2
참고자료 1. 대법원 구성의 변화	9
참고자료 2. 대법원장·대법관 현황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5. 8.
3. 회 부 일 : 2025. 5.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법질서의 통일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법의 중심축임. 그러나 현행법상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법관의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III. 검토의견

1.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확대(14명→100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86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부칙은 이 중 28명의 증원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9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리고 나머지 29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4조(대법관) ①(생략)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u>14명</u> 으로 한다.	제4조(대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100명</u>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의 정원 86명 중 28명의 증원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29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29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대한민국헌법」 제102조제2항¹⁾은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4조제2항²⁾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87년 10월 29일 개정헌법 시행에 따라 법원조직법이 전부개정된 1987년 12월 4일 이래 대법관 중에서 보하였던 법원행정처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대법관의 수를 1명 감원하였던 일부 기간(2005년에서 2007년까지)을 제외하면, 대법관의 수는 계속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유지되었음.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대법원이 9명 이내의 대법관과 11명 이내의 대법원판사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1949년 법원조직법이 제정된 이래 대법원은 9인 내지 15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옴(참고자료 1. 대법원 구성의 변화 참조).

-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상고심 사건을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1)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2)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 최근 10년 대법원의 사건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물론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매년 약 3만~5만건 정도의 상고심 본안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대법관들의 재판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³⁾.

<최근 10년 대법원 사건 접수·처리 현황>

연도	상고심 본안사건		가동 대법관 수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
	접수건수	처리건수		
2014	37,652건	38,193건	12인	3,183
2015	41,850건	41,871건	12인	3,489
2016	43,694건	43,129건	12인	3,594
2017	46,412건	44,232건	12인	3,686
2018	47,979건	48,105건	12인	4,009
2019	44,328건	42,263건	12인	3,522
2020	46,231건	38,809건	12인	3,234
2021	40,489건	43,980건	12인	3,665
2022	52,480건	48,460건	12인	4,038
2023	37,669건	39,662건	12인	3,305

자료: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 통계자료 재구성

50대 남성, 특정 대학 출신의 전현직 법관 위주의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사법부의 신뢰 제고 방안이나 사법개혁의 과제의 하나로 계속 거론되는 사항 중 하나임.

3) 또한, 현행 심리불속행제도는 1990년 국민에게 3심제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상고허가제 대신 도입되었으나, 약 75%에 달하는 민사사건들이 실질적으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에 의해 판결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처리되고 있어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자료: 김용섭, 「상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동북아법연구 vol.16, no.2, 2022, pp. 315-352

- 개정안과 같이 대법관의 수를 증원한다면, 대법관의 재판업무부담 경감 및 국민의 권리구제 또는 재판청구권 보장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대법관이 임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대법관 수 증가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 운영(「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4)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점, 상고심 재판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켜 사건 수를 더 증가시키는 연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점⁵⁾,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현행법 체제⁶⁾ 내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반드시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는 점, 대법관 증원은 상고허가제 도입, 상고심사제 도입,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⁷⁾과 연계하여

4)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 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21대국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7호,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p.12

6)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7) 상고제도 개선방안들의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21대국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7호,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pp. 9~13. 참조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개정안과 같이 대법관을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경우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인건비, 청사 확보와 전원합의체 운영방식 등 조직의 정비를 위해 예산⁸⁾ 및 기반의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제18대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6명 증원하여 20명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되, 제1전원합의체와 제2전원합의체(대법관 각 9명, 대법원장 포함 10명)를 두고, 두 합의체 간 법령의 해석·적용 등에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연합전원합의체를 두는 방식으로 상고심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⁹⁾하였던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주요국의 최고법원 구성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미국은 9명, 영국은 12명, 일본은 15명으로 15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미국의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을 기본으로, 일본의 경우 부 재판관을 원칙으로 하되 전원합의체 재판도 하고 있으며,

8) 국회예산정책처는 제21대국회에서 대법관을 34명(14명→48명) 증원하는 개정안(의안번호 제2617호, 이탄희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향후 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총 527억 4,500만원(연평균 105억 4,900만원)으로 추계한 바 있음. 이는 대법관 및 대법관비서관(4급) 인건비와 증원인력(대법관 34명, 대법관비서관 34명)의 사무실 마련을 위한 청사 증축비용을 합한 것임.

9)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18대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1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독일은 연방일반대법원에 130여명, 프랑스는 파기원에 120여명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법관을 두고, 사건의 유형에 따라 전문부를 상설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1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조사자료 기준).

<주요국 최고법원 구성>

국가	최고법원 구성원 및 수	재판부 구성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원장 포함 9명의 대법관	전원합의체
영국 (대법원)	대법원장 포함 12명의 대법관	원칙적으로 5명으로 부를 구성하여 재판
독일 (연방일반대법원)	130여명, 재판장과 배석법관으로 구성	원칙적으로 부(26개 설치) ¹⁰⁾ 에서 재판
프랑스 (파기원)	120여명, 재판장과 대법원판사로 구성	원칙적으로 부(6개 설치) ¹¹⁾ 에서 재판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 포함 15명의 재판관	원칙적으로 부에서 재판, 예외적으로 전원합의체

자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18대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1

- 한편,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86명 증원하면서 3년간 1년차에 28명, 2년차에 29명, 3년차에 29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10) 독일 : 민사부 13개, 형사부 5개, 특별부 8개로 구성. 한편 독일(연방)의 경우 일반대법원 외에 행정대법원·재정대법원·노동대법원·사회대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11) 프랑스 : 민사부 3개, 상사부 1개, 형사부 1개, 사회부 1개로 구성. 한편 프랑스의 경우 행정사건은 국사원(Conseil d'Etat)의 관할임.

구체적인 단계적 증원 규모는 현행 대법관 교체 시기(참고자료 2. 대법원장·대법관 현황 참조),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 및 다수 대법관 일시 증원 시 중립성 및 다양성을 갖춘 적임자 충원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16명 증원하면서 1년차에 8명, 2년차에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법안(의안번호 제10375호,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이 함께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김용민의원안 (제10375호)	장경태의원안 (제10430호)
대법관 수	14명	30명(16명 증원)	100명(86명 증원)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공포한 날부터
단계적 증원 규모		공포 후 1년: 8명 공포 후 2년: 8명	공포 후 1년: 28명 공포 후 2년: 29명 공포 후 3년: 29명

-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도 충실한 상고심 심리와 대법관 다양화 등을 위하여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의안번호 제2617호, 이탄희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071

참고자료 1 대법원 구성의 변화

법원조직법 제·개정 시기	대법원의 구성	대법원의 재판부	비고
1948. 5. 4. (과도 법원조직법)	대법관 11인 이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민사부, 형사부, 특별부) + 전원연합부	고법 상고부 설치 (1심 단독사건)
1949. 9. 26. (제정 법원조직법)	대법관 9인 이내		고법 상고부 폐지
1959. 1. 13.	대법관 9인 이내 + 대법원판사 11인 이내	대법관 1인 이상 포함된 법관 5인으로 구성된 소부(민사부, 형사부, 특별부) +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소부 +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연합부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1961. 8. 12.	대법원장 포함 대법원판사 9인	전원합의부만 둬	고법 상고부 설치 (1심 단독사건) '대법관'을 '대법원판사'로 명칭 변경
1963. 12. 13.	대법원장 외 12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 + 전원합의부	고법 상고부 폐지
1969. 1. 20.	대법원장 외 15인		
1981. 1. 29.	대법원장 외 12인		상고허가제 실시 (1981. 3. 1.)
1987. 12. 4.	대법원장 외 대법관 13인		'대법관'으로 명칭 변경
2005. 12. 14.	대법원장 외 대법관 12인(*)		상고허가제 폐지 (1990. 9. 1.)
2007. 12. 27. 이후	대법원장 외 대법관 13인(*)		심리불속행제 실시 (1994. 9. 1.)

(*) 대법관 중에서 보하도록 하였던 법원행정처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대법관의 수를 1명 감원하였으나(2005. 12. 14.), 법원행정처장을 다시 대법관 중에서 보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대법관 수를 다시 1명 증원함(2007. 12. 27.).

자료: 대법원 주최 토론회 자료집,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2021. 5. 21., p. 8 표를 바탕으로 재구성

참고자료 2 대법원장 · 대법관 현황

(2025. 5. 8. 현재)

	구분	성명	학력 (사법시험 회수)	임기시작	임기만료
1	대법원장	조희대	서울대법대 (23회)	2023. 12. 8.	2027. 6. 5.
2	대법관	노태악	한양대법대 (26회)	2020. 3. 4.	2026. 3. 3.
3	대법관	이흥구	서울대법대 (32회)	2020. 9. 8.	2026. 9. 7.
4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서울대법대 (30회)	2021. 5. 8.	2027. 5. 7.
5	대법관	오경미	서울대법대 (35회)	2021. 9. 17.	2027. 9. 16.
6	대법관	오석준	서울대법대 (29회)	2022. 11. 25.	2028. 11. 24.
7	대법관	서경환	서울대법대 (30회)	2023. 7. 19.	2029. 7. 18.
8	대법관	권영준	서울대법대 (35회)	2023. 7. 19.	2029. 7. 18.
9	대법관	엄상필	서울대법대 (33회)	2024. 2. 29.	2030. 2. 28.
10	대법관	신숙희	서울대법대 (35회)	2024. 2. 29.	2030. 2. 28.
11	대법관	노경필	서울대법대 (33회)	2024. 2. 29.	2030. 2. 28.
12	대법관	박영재	서울대법대 (32회)	2024. 8. 2.	2030. 8. 1.
13	대법관	이숙연	고려대법대 (36회)	2024. 8. 6.	2030. 8. 5.
14	대법관	마용주	서울대법대 (33회)	2025. 4. 9.	2031. 4. 8.

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소개 >> 대법원장 및 대법관, 2025. 5. 8. 최종 확인